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1 발의연월일: 2021. 2. 4.

발 의 자 : 김영배 · 김진표 · 김철민

박찬대 · 송재호 · 양기대

양정숙 • 이용빈 • 임호선

정찬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법이 개정 전 규정에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법인 또는 단체'라는 부분을 부가하여 감면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, 개정 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복지법인, 사단법인, 재단법인, 학교법인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었고, 2022년으로 세제감면 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업참여자 감소 및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우려됨.

이에 세제감면 대상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' 부분을 삭제하고,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

세,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기간 제한 없는 세제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며,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, 주민세 등을 제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22조제1항·제3항, 제177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"을 "해당"으로, "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사회복지법인등이"를 "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"로, "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면제한다"로 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29조"를 "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9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제22조(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대하 감면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감면) ① -----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(이하 이 조에서 "사회복지 사업"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사회 복지법인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-----면제한다.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 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하는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직접 사용(종교단체의 경우 해 조에서 "사회복지법인등"이라 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한다)가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

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부 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 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,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 는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 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종업 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 ----면제한다. 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7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(생략)
- 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

					나 같		
177	7조:	의2(지병	방세	감	면	특례의
제형	한)	1					

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 조제1호, <u>제29조</u>, 제30조제3 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, 제50조, 제55조, 제57 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 일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 의3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 항·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 76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8 2조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 른 감면

- ② (생략)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u>제22</u> 조제1항부터 제
<u> 3항까지, 제29조</u>
② (현행과 같음)
3
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
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